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

2018. 11. 1

관계기관 합동

목 차 _____

□. 검토 배경1
□. 현황 및 진단2
Ⅲ. 개선방향 및 추진 과제 ······ 4
1.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 6
2.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15
3. 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······ 18
4.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24
IV. 기대효과 30
∨. 향후 추진 계획31

Ⅰ. 검토 배경

- □ **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**을 위해서는 **혁신 기업이 적기에 충분한**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
 - * 미국 5%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/3를 창출('10년) 영국 6%의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%를 창출('09년)
 -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은 **은행**(대출)과 **자본시장**(투자)이 **상호 보와**해 가며 **각자의 역할을 수행**할 때 내실화가 가능
 - * (대출) 기업의 과거 성과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 (중기·후기에 적합) (투자) 기업의 미래 성장가치를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 (초기·중기에 적합)
- □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측면
 - * '17년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규모는 235.4조원으로, 국내 기업대출잔액 814.4조원의 29%에 불과하나. 미국의 경우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출금의 2.3배를 상회
- □ 아울러,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도 **상장 기업에 치우쳐** 초기· 중기 기업의 **성장자금을 중개하는 기능은 미약**
 -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**직접금융을 거의 활용 하지 못하는 상황**
 - * 중기 자금조달비중(%. 17년): 대출(73.4) 정책(23.4) 직접금융(2.2) 기타(1.0)
 - **증권사・운용사**도 상장주식 중개・투자에 중점을 둔 사업모델에 치우쳐 벤처・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
 - * '16.4월부터 중기특화 증권회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, '18.3월까지 유상 증자 93억원, 직접투자·출자 623억원 등 자금조달 지원 실적이 미미
 - ⇒ 혁신기업이 상장단계는 물론, 비상장상태인 창업·성장단계에서부터 자본시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

Ⅱ. 현황 및 진단

- □ 비상장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치 못함
-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 위주로 설계^{*}되어 비상장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곤란
 - * 증권신고서 외 외부감사 수감의무, 사업보고서 및 수시공시 등의 의무 부과
-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금조달 방식은 **조달금액이 적거나*** 자금 **모집방식에 제약**이 커 중소기업 활용도가 저조
 - *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7억원. 소액공모는 10억원
- 2 자본시장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투자자군*이 미형성
 - * 전문투자자는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 규제가 일부 면제되어 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상장회사 투자에 적합
- 까다로운 요건*과 등록절차로 인해 개인 전문투자자군이 형성되지 못하여 자본시장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진입이 제한
 - *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^①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^②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- 중소·중견기업, 구조조정기업 투자를 주로하는 **사모펀드**의 경우에도 **엄격한 운용규제*** 등으로 **역할 수행에 제약**
 - * 사모펀드가 포트폴리오 투자 펀드, 기업지배목적 투자 펀드로 이분화 등
- ③ 주관사의 자율성·책임성을 저해하는 상장제도 잔존
- IPO과정에서 주관사의 재량이 크지 않고*, 이에 따른 보상과 책임성**도 낮아 증권회사들의 적극적인 혁신기업 발굴 및 IPO 유인이 부족하고 사후적 투자자 피해 구제에도 한계
 - *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배정 등에서 경직적인 규제가 존재
 - **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고, 과징금도 최고한도가 20억원 수준으로 낮은 측면

4 비상장기업 발굴 · 육성을 저해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

- IPO과정에 적용되는 사전적 이해상충 규제로 **혁신기업 발굴** → 육성 → 상장(회수)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불가
 - * 증권회사는 본인이 5%이상 보유 중인 기업의 IPO주관 및 최대물량 인수 금지 등
- 비상장기업 투자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**건전성 규제와 직접적 투자제한**^{*} 등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한계
 - * 예) 증권사의 증권담보대출은 예탁된 증권으로 한정

5 중소기업금융 특화 증권사 출현을 어렵게하는 제도적 제약

- **높은 진입요건과 획일적 진입절차**로 인해 증권회사 업무의 **다양성이 크게 부족**한 상황
 - * 모든 증권회사가 "인가"로 진입하고 선진국에 비해 최소자본금도 높은 측면
- 그간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**경직적이고 복잡한 Add-on 인가** 체계는 신규 비즈니스 개발과 진출이 지연되는 측면이 상존

6 법령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증권회사 내부 영업행위 규제

- **정보교류차단장치**(Chinese Wall)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약받는 측면
- 정보를 차단해야할 업무·부서를 법령에서 직접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조직구성 및 인사에 자율성이 결여
- 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Fintech 등 IT기술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
 - * 예) 매매주문의 접수·전달·집행 및 확인업무는 모두 본질적 업무로 非증권회사에 위탁이 불가능하여 Fintech업체와 협업이 불가능

Ⅲ. 개선방향 및 추진과제

〈기 본 방 향〉

- ① 직접금융시장(자본시장)을 간접금융시장(대출 시장)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
 - 기업의 **대규모 성장자금**은 **미래 성장성**에 기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 **자본시장을 통해 공급**하는 것이 적합한 만큼,
 - **풍부한 민간 자금**이 중소·벤처기업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**자금공급 체계 전반**을 재설계
- ② 전문투자자와 비상장기업 중심의 **사적 자본시장**을 일반투자자 · 상장기업 위주의 **전통적 자본시장 수준으로 육성**
 - 위험 감내 능력이 있는 **투자자와 기업간의 사적 계약**에 기반을 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**유연한 규제체계 마련**
- ③ 혁신기업 자금공급에 **증권회사가 IB로서 보다 많은 역할**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
 - **증권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** 제고를 바탕으로 **혁신기업의** IPO를 보다 활성화
 -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다수의 Positive규제를 **Negative규제**로 **전환**하여 기업금융업무에 자율성을 제고
 - **사적 자본시장 중심**의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증권회사에는 보다 **낮은 진입장벽과 간소화된 규제**를 적용
- 4 **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 전반에 과징금을 도입**하여 투자자 피해 유발 회사에는 **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**
 - ➡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마련

〈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 〉

- □ (전략①)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체계를 전면 개선
- □ (전략②)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
- □ (전략③)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되어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개편하고 코넥스 시장 역할을 재정립
- □ (전략4) 금융투자업 규제 개혁을 통해 증권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
- □ **4대전략과 병행하여** 위법행위에 대한 **과징금 도입** 및 투자자 피해 유발 회사에 대한 **엄정 대응을 통해 투자자 보호 내실화**

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생태계 구축

전략1

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개선

- 1.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
- 2. 자산의유통화를통한자금조달기회확대
- 3.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(BDC) 제도 도입

전략3

IPO제도개편 및코넥스역할재정립

- 7. 신규공모(IPO) 제도 개편
- 8. 인수제도 선진화
- 9.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

전략2

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

- 4. 개인 전문투자자문호 개방
- 5. IB의 비상장기업투자 제약 요인 해소
- 6. 사모펀드규제체계 개편

전략4

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

- 10.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 개선
- 11.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 재정비
- 12.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

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

전략1

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전면 개선

과제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기업이 **자본시장**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^①**일반 공모**, ^②소액공모, ^③크라우드펀딩과 ^④사모 등 4가지로 구성
 - **일반공모**는 증권신고서와 각종 공시규제로 중소·벤처기업보다는 **상장기업을 위한 자금조달제도**로 적합
 - 여타 3가지 제도의 경우 **조달가능금액이 낮고** 모집방식이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**중소·벤처기업이 활용하는데 한계**
 - 이에 따라, 우리 중소·벤처기업들은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공공자금이 주도하는 VC 투자에 주로 의존하는 상황
 - ※ 중소기업의 94%는 자본시장 활용계획이 없으며, 증권발행을 시도한 기업의 경우 발행절차의 복잡성을 가장 큰 문제(64%)로 제기

권유자수	조달한도	명칭	비고
	제한 없음	일반공모	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 등 약 27종의 서식 제출 의무 등
50인 이상	10억원 미만	소액공모	소액공모공시서류 등 약 17종의 서식 제출 의무 등
	7억원 이하	크라우드 펀딩	재무상황, 사업계획서 등을 중개업자에게 제출
50인 미만	제한 없음	사모	-

- □ 미국·EU의 경우 중소기업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 (☞참고1)
 - * ① 미국 : 사모자금 조달시에도 공개적 투자권유를 허용하고 소액공모 모집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(JOBS ACT)
 - ② EU: 증권신고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용 전용 증권신고서 양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(Prospectus Regulation)

- [] **사모발행^{*} 판단기준을 현실화**하여 사모 자금모집 활용도를 제고
 - * 소수의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증권의 유통을 제한한 자금모집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도 허용하는 제도
 - (현행) 기업(증권사)이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는 경우 공모로 보아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 부과
 - (개선)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
 - 투자자 보호를 위해 **충분한 투자정보**가 사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, 사모발행 후 **2주 이내 금감원에 보고**하도록 의무 부과
 - * 사모 발행 보고사항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
 - 일반투자자 대상 **청약권유**시 활용한 서류를 **10년간 보관**토록 하고 해당 증권에 대한 **이해여부 확인** 등의 **의무를 부과**
- ②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광고(SNS, 인터넷 포함) 등을 활용한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
 - (현행) 공개적 자금모집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만 허용하여 사모(증권신고서 미제출)의 경우 공개적 자금모집을 불허
 - **(개선)** 실제 투자자가 **모두 전문투자자**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**공개적인 자금모집** 허용(美)
- ③ 크라우드펀딩*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조달금액을 대폭 확대
- * 인터넷플랫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소액 으로 모집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심사 없이도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
- o (현행)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이 연간 7억원까지 조달 가능
- (개선)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*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연간 조달금액을 15억원으로 확대 (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)
 - * 소액공모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

- 4 소액공모* 조달금액을 확대하고 단계적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
 - * 일정규모 이하의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 만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
 - (현행) 자금조달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면제하는 등 간소한 절차^{*}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발행시 소액공모 공시서류만 제출하고 증권신고서 면제, 매사업연도 경과후 90일내 결산서류만 제출하고 사업보고서 • 주요사항보고서는 면제
 - (개선) 조달가능 규모에 따라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
 제도를 이원화하고, 투자자 보호 장치는 차등하여 적용
 - * 일반공모 실적이 있는 코스닥・유가증권 상장기업은 현행 한도(10억원)를 유지
 - i) (30억원 이하) 현행 소액공모 투자자 보호 장치에 소액공모서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을 추가
 - ii) (30억원~100억원) 30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에 감독당국 신고의무 및 일반투자자별 투자한도를 적용하고, 사업연도 말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

일반공모/소액공모제도 비교

구 분	(현행 소액공모	(개선) 소액공모^①	(개선) 소액공모^❷	일반공모
조달 금액	10억원	30억원	100억원	제한 없음
발행 공시	소액공모서류(17종) (최근 감사보고서 포함)			증권신고서 (27종)
신고수리 여부 (정정요구 포함)	불필요	불필요	필요(신설)	필요
1인당 투자한도(신설)	-	-	(일반투자자) Max(직전년도 총수입, 순자산의 10%) (전문투자자) 없음	-
정기적 자료 제출	결산서류	결산서류	감사보고서(신설)	사업보고서 (감사보고서 포함)
수시 공시		-		적 용
공유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	-	적	용(신설)	적 용
공시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	-	적	용(신설)	적 용

참고1

선진국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

1. 미국 (JOBS ACT, 2012)

- □ 새로운 자금조달 수요와 조달방식 등의 출현에 맞추어 중소·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제고를 위해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한 대표적 사례
 - 사모 자금조달의 경우에도 공개적 투자권유 및 광고 허용
 - 최종투자자가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될 경우,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청약의 권유 및 투자광고를 하더라도 공모로 간주하지 않고 사모로 취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
 - 2 소액공모 조달 한도 대폭 확대
 - **간이등록신고서**(韓, 소액공모) 제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**\$500만에서 \$5,000만**으로 10배 증액
 - **③** 집단지성을 활용한 자금조달 통로로 **크라우드펀딩제도** 도입
 - 4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기업 기준 완화
 - SEC강제등록(사업보고서 제출) 기준 주주수를 500명에서 2,000명 (전문투자자 1,500명이상)으로 상향 조정(자산 \$1,000만은 유지)

2. EU (Prospectus Regulation, 2017)

- □ EU는 기업자금조달 활성화를 통한 **일자리 창출·경제성장**을 위해 투자설명서(韓, 증권신고서) 지침을 대폭 완화
 - 투자설명서가 면제되는 공개적 자금모집 금액을 기존 50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로 확대
 - ② 상장증권과 동종증권을 통해 유상증자하는 경우 **증자비율이** 20%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제출을 면제
 - 3 보다 간소화된 비상장 중소기업용 투자설명서 양식을 신설

과제② 기업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

1. 현황 및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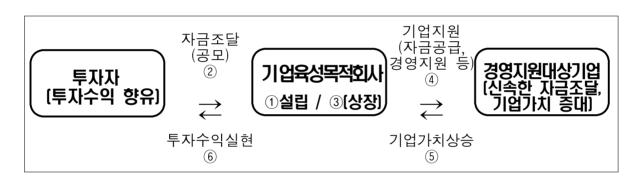
- □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*은 담보제공, 유동화 등을 통해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
 - * 부동산, 동산(기계설비, 재고자산, 농축수산물, 매출채권, 지식재산권 등)
 - 특히,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**중소기업***의 경우 **동산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**은 매우 **중요한 의미**
 - * 중소기업 자산보유 비중(%): (동산)38, (부동산)25, (현금 등 기타)37
- □ 자산유동화는 기업이 보유 중인 비유동성 자산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(SPC)을 설립하거나 신탁하여 SPC 또는 신탁업자가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(자본시장을 활용한 동산금융)
 - 유동화를 하는 경우 자산을 기초로 **기업의 신용도보다 높은** 등급으로 증권 발행이 가능하여 자금 **조달비용을 낮추는 장점**
- □ 국내 자산유동화 제도는 '98년 도입 이후 급성장하였으나, **적극적 제도정비가 없는 가운데** ABCP 등 **우회 수단이 활성화**되면서 **활용도가 낮아지고** 있는 상황
 - * ABS 발행 규모(조원): ('99)6.8, ('03)39.9, ('08)20.6, ('13)51.3, ('17)57.6
 - 유동화방식의 획일성·경직성 등으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(ABS)는 **주택금융공사 MBS**와 **여신전문기관 대출상품 유동화** 등 **특정상품에 제한적으로 활용**
 - * ABS 자산별 구성(%): (MBS)55.1, (매출채권)14.7 (여신금융채권)13.4, (대출채권)9.2, 증권(4.4), (PF)3.2
 - 공시 등 **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법상 유동화**(ABCP등)가 **활성화*** 되면서 ABS가 위축되고 투자자 보호문제**도 지속 제기
 - * ABCP발행규모(조원): ('12)12.9, ('13)58.9, ('14)74.0, ('15)128.4, ('16)146.4, ('17)128.0
 - ** 예) '18.5월 中 CERCG 관련 ABCP에서 부실이 발생하여 1,050억원의 손실발생 우려

- □ 중소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 등을 유동화하여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Negative 규제체계로 개선
 - (활용기업 확대) 기업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이라도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**자산유동화를 허용**
 - (포괄유동화 허용) 하나의 유동화 전문회사(SPC)를 통해 복수 유동화 계획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자산별 등록의 복잡성 해소
 - (SPC 종류 다양화) 자산의 성격과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법적 형태의 SPC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현재는 SPC의 법적 형태를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 중
 - **(발행절차 간소화)** 자산유동화를 위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유동화 계획등록 서류와 등록 절차를 증권신고서 수준으로 개선
- □ 중소기업이 보유한 **기술·재적재산권**(IP) 등 동산자산의 **유동화가** 용이하도록 유동화 신탁제도를 보완
 - 기술·지적재산권의 경우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**담보신탁** 방식으로도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
 - *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 탈취 우려 등으로 이를 양도하는 것을 꺼려 재산권의 '진정양도'를 전제로 하는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곤란
- □ "동일기능 동일규제" 원칙을 마련하여 자산유동화법상 ABS와 상법상 ABCP등간의 규제차이를 줄이고 투자자보호를 강화
 - 상법에 따라 유동화회사(SPC)를 설립하더라도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**동일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**되도록 보완
 - * 다만,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
 - 유동화증권 관련 **공시를 확대**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**자산** 보유자가 적극적으로 **자산을 관리할 유인 구조** 등을 마련
 - * 예) 미국의 경우 자산보유자가 ABS 지분을 5%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

과제③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(BDC) 제도 도입

1. 제도 개요

- □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(자금모집) ·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
 - **투자자금을 모집하는 SPC를 우선 상장**한 후 투자대상을 발굴 한다는 측면에서 **기업인수목적회사**(SPAC)**와 유사**하지만,
 - ^①비상장기업에 대한 ^②자금공급과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시켜 투자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**투자대상·전략** 등에서 비상장기업 M&A를 목적으로 하는 SPAC과 구별



- □ BDC는 투자자가 직접 BDC에 환매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상장 되어 있어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BDC 지분을 매각이 가능
 -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상장기업 투자시에 직면하게 되는 **장기간의 투자기간과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소**할 수 있는 장점
 - 기업도 청산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에 의한 투자 보다 자금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BDC에 의한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

<미국 BDC 도입 배경>

- ♦ 1970년대의 신용위기로 소규모 성장기업으로의 자본유입이 쇠퇴하자,
- 美의회는 1980년에 소기업투자촉진법안*을 마련하여, 사모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투자체인 BDC(Business Development Company)를 도입
 - * 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of 1980

2. 제도 도입방안

공시의무 부과

- □ (정의) 상장된 투자목적회사로서 비상장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과 Value-up 등 경영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기구 □ (투자대상기업) 비상장기업, 코넥스 상장기업 등으로 한정 * 금융 • 보험업. 사행성사업 등은 배제 ※ 미국의 경우 비상장법인 또는 시총 2.5억불 미만의 상장기업 ☐ **(투자요건)** 투자대상기업에 **총자산 70%이상 투자***를 의무화 * 어음, 주식, 채권, 대출, 이익참가부 증권 등 폭넓은 투자 방식 허용 ○ 집중위험 회피를 위해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(예:10%)를 설정하는 등 원칙적으로 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규제 적용 * 펀드재산의 신탁회사 보관,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등 ○ 여유자금(30%)은 국·공채 등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을 허용 □ (운용주체)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○ BDC 설립시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**발기인**(스폰서)으로 참여하고 BDC가 발행한 주식총액의 5%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여 책임있는 자산운용을 유도 □ (상장절차) 발기인의 자격 및 기업규모 등 최소한의 외형요건 으로 상장요건 충족여부 확인(상장예비심사 x) * 형식적 상장요건 충족 시 신규상장(현행 집합투자증권 상장 절차를 준용)
 - ※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구인 만큼, 기존의 투자기구들과 유사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세제당국과 협의를 추진

□ (상장관리) 투자, 채권·채무, 손익, 결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

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any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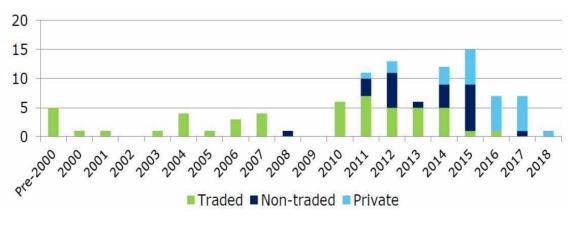
- □ (개요) 투자회사법 개정('80년)으로 사모(폐쇄형) 투자회사를 공모형 투자회사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BDC 제도를 도입
 - 상장이 강제되지 않으며, '18년 6월말 기준 96개* BDC가 운영 中 ('17년말 기준으로 총자산규모는 약 900억달러 수준)
 - * 상장 BDC 50개, 非상장 BDC 23개, 사모 BDC 23개

[미국의 BDC 제도(요약)]

구 분		내 용		
	대상	총자산의 70% 이상을 비상장사나 상장사 중 시총 2.5억달러 이하의 기업에 투자		
투자	포트	포트폴리오 50%이상을 총자산의 5%미만 종목으로		
	폴리오	구성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의무화		
	방식	대출(약 80%) , 주식투자, 구조화 금융 등		
레브	버리지	자기자본 200% 이내 허용		
성과배분		매년 이익의 90%이상 배당(90%이상 배당 시 법인세 면제)		
기업공개 필요에 따라 NY		필요에 따라 NYSE, NASDAQ 상장 가능		

□ (美 BDC **현황**) 상장 BDC(50개)는 자산 630억달러(시총 370억달러), 非상장(23개)은 130억달러, 사모 BDC(23개)는 210억달러 보유

【 美 신설 BDC 현황 】



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

과제④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현행 전문투자자는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구성
 - * 전문투자자 개념은 공/사모 구분 기준(청약권유대상자 50인 산정시 제외) 및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보호규제 적용여부 판단시에 활용
- □ 개인과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로 분류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투자자로 전환 가능
 - **(요건)**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 - (절차)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투자자로 등록

- □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화
 - ① 투자경험이 있는 자*로서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**을 갖춘 자
 - * 예) 금융투자상품 5천만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자 등
 - ** ①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합산 1.5억원 이상인 가구 또는
 - ② 순자산(주거 중 주택은 제외)이 5억원 이상인 가구
 - ②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*
 - * 금융투자업 종사자, 변호사, 회계사, 엔젤투자자,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(일부) 등
- □ 금투협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, **증권회사가 심사**하도록 하되 심사관련 **사후 책임을 강화**
 - 증권회사의 **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***를 **불건전 영업** 행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제재
 - *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,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

과제5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 해소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다양한 **건전성 관련 규제**들로 인해 증권회사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
 - 레버리지비율 규제 및 신용공여 한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・융자여력이 제한적
 - * 비상장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건전성 규제상 상장기업보다 위험가중치 등이 높아 자금공급 유인도 크지 않은 측면
 -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**주식담보 대출 범위를** 법**령으로 제한**
- □ 증권회사의 중소기업 투자 목적으로 **신기술금융업 겸영**이 증가 하고 있으나, **정보교류차단장치 등으로 활성화에 제약**
- □ CB·BW 등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, **발행·공시제도** 등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
 - * 상장법인 CB·BW 발행규모(조원): ('14) 1.9 ('15) 3.0 ('16) 6.7 ('17) 8.0

- □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
 - * 예) 비상장기업 투·융자는 기존 레버리지비율 및 신용공여규제에서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한도를 부여
- □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 및 제3자 보유 증권 담보 대출 허용
- □ 증권회사의 신기술금융업 겸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기준 마련
- □ CB·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

과제⑥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

* '18.9.27일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 기발표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현재 사모펀드는 설립단계부터 **경영참여형 사모펀드**(PEF)와 **전문투자형 사모펀드**(헤지펀드)로 구분되어 **별도의 운용규제 적용**
 - * 경영참여형: 10% 이상 지분 보유, 취득주식 6개월 이상 보유, 대출불가 등 전문투자형: 10% 이상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제한, 운용규제 대폭 완화
 - 전문투자형은 포트폴리오 투자, 경영참여형은 기업지배목적 투자만 가능하여 메자닌투자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운용에 제약

- ① '전문투자형', '경영참여형'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"일원화"하고,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
 -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**10% 지분보유 조항을 삭제**하여 **단순투자**에서 **경영참여**까지 모두 가능토록 **규제 완화***
 - * 현행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
- ②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"(가칭)**기관전용 사모펀드**"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**금융당국 개입 최소화**
 -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위 승인없이 **투자자**(LP)**가 운용사** (GP)를 **직접 검사**할 수 있도록 하여 **투자자 권한을 확대**
-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"사모펀드 범위 재정립*"
 - * (현행)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 → (개선) 기관투자자 제외 100인 이하 (일반투자자는 49인까지만 허용)
- 4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는 "현행 유지"

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

과제 🗍 주관사 자율성・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공모제도 개편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신규공모시장(IPO)은 혁신기업이 일반투자자에게 최초로 소개되는 접점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이자 IB업무의 핵심
- □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증권회사의 노력으로 우리 IPO시장은 **양적인 측면에서 성장***을 거듭해 옴
 - * 연도별 코스피 IPO 규모(조원) : ('15) 2.4 ('16) 4.3 ('17) 3.4
- □ 다만, 우리 IPO시장은 자본시장육성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중심 으로 조성되어 시장의 "자율과 책임"은 상대적으로 미흡
 - ① 주관사가 해야 할 가격, 물량 배정 등의 역할을 상당부분 공적규제 등이 관여하고, 이에 대한 책임도 공적 인프라가 일부 분담
 - 수요예측* 및 주식배정**에 있어서도 주관사에게 재량이 없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유인이 크게 부족
 - * 주관사 재량에 따라 수요예측제도 참여자를 제한하지 못함
 - ** 코스피: (우리사주)20%, (일반투자자)20%, (하이일드)10%, (기관)50% 코스닥: (일반투자자)20%, (하이일드)10%, (코스닥 펀드)30%, (기관)40%
 - ② IPO시 주관사 역할은 사실상 공적 인프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
 - 낮은 수수료 등 IPO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증권사는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상장시킬 유인이 크게 부족
 - ❸ 공적 규제 등으로 인해 주관사의 법적책임도 제한되는 측면
 - *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되고, 과징금도 최고한도가 20억원 수준에 불과

2. 개선 방안

- □ **수요예측제도***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주관사에게 **최초** 가격산정에서 자율성을 부여
 - * IPO기업 최초 가격산정을 위해 기관투자자등을 중심으로 청약 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
 - 기관투자자의 **충분한 검토기간** 부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게 **해당기업에 대한 일정수준의 정보제공**을 허용
 - * 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기관투자자와 서면 구두 의견교환을 허용 중
 - 물량확보를 위해 과열양상을 보이고,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**수요예측시장**의 **관행 정상화 방안**을 마련
 - * '17.1월~'18.6월 중 평균 수요예측 경쟁률은 345:1이며, 참여기관 1사당 신청 물량이 평균적으로 전체 배정물량의 50% 수준에 달함
 - * 신청가격도 물량확보를 위해 가격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경우가 41%

※ 검토가능과제(예시)

- ㅇ 가격발견 기여도가 없는 기관투자자를 수요예측에서 배제
- ㅇ 허수청약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에게도 청약증거금 징수
- ㅇ 의무보유확약 기관투자자에 대한 물량배정 우대 등
- **수요예측 참여자**를 주관사가 **자율적으로 선정**하도록 허용
 - * 현재는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자를 임의적으로 배제할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한 Put-back Option 부여 의무화
- 최초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공적 플랫폼의 심사를 최소화
 - * 상장예비심사청구 서식에서 가격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, 상장규 정에 최초가격 산정은 주관사의 역할임을 명시 등
- □ 신주배정과 관련한 공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
 - 하이일드펀드 등 **공모주 배정에 있어** 주관사 **자율배분 물량을** 점진적으로 확대

○ IPO 물량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**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**를 도입

<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>

- (개요)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
- o (장점) 전문성 높은 대형 기관투자자인 코너스톤 투자자를 인정함에 따라 공모가격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공모 성공이 촉진
- □ 주관사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
 - 주관사가 기업 실사 전반의 Due Diligence에 대해 책임지도록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과징금 한도(20억원)를 대폭 상향
 - 상장 후 적극적인 시장조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
 역할 활성화 방안을 마련
- □ 상장요건 중 **질적심사*** **요건의 객관성을 제고**하는 한편, **질적** 심사를 기업투명성 심사 위주로 점진적으로 전환
 - * 정량적 요건(매출액, 시총 등)외에 기업계속성(15개 항목), 경영안정성(5개 항목), 기업투명성(12개 항목) 등 3개 분야에 대해 정성적 심사
 - 질적심사 요건을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 정비하고 심사기준에 대한 매뉴얼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
 - 기업 계속성심사 면제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^{*}하는 등 계속성 심사를 단계적으로 축소
 - * 예) 코스닥의 경우 현재 시총 상위 2% 해당기업에만 면제 중이나 상위 10% 수준으로 확대
 - 수요예측시장 관행 정상화,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보아 가며 거래소 **질적 심사를 기업투명성 위주 심사로 전환** 추진
 - * 기업계속성 · 안정성 요건은 IPO 주관사가 책임지고 평가

과제⑧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IPO과정에서 이해상충* 방지를 위해 인수인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증권사의 혁신기업 발굴 유인이 약화
 - *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치를 높게 산정하거나, 계열 자산운용사 등을 활용하여 인수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 등
 - ① 본인이 5% 이상 이해관계인과 합산하여 10%이상 보유한 회사의 IPO 주관 및 최대물량 인수금지
 - → **혁신기업 발굴・육성**을 활발히 한 증권사일수록 IPO업무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
 - ② 자산운용사 등은 계열 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증권은 인수일 부터 3개월간 펀드 재산 등에 편입 금지 (수요예측 참여 불허)
 - → 인수회사의 계열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와 공모주 배정이 제한 되어 금융그룹소속 증권사의 IPO 업무 참여 기피

- □ 사전적·원칙적 금지보다는 이해상충방지 장치^{*}를 갖춘 경우 인수인 자격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한적 허용·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
 - * 예) 이해관계 없는 자와 공동 주관, 시장 조성 역할 수행, 본인 및 이해 관계인 보유 지분 보호 예수 등
- □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계열 증권회사 등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서도 **편드 재산 등의 일정 범위내에서 편입을 허용**
 - * 최초 공모가가 공모 희망가격 범위 보다 낮게 설정되거나, 계열사 제외시 청약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펀드 재산에 편입을 금지
 - 다만,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수요예측의 경우 매입희망 물량의
 제시만 허용하고 가격제시는 금지

과제⑨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코넥스 시장은 시장출범 후 **상장기업수**, **시가총액**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**초기기업 자금조달**, 코스닥상장 대비 시장으로 안착 중
 - * (상장기업) '18.9말기준 148개사로 개장일('13.7.1일) 대비 7배 증가 (시가총액) '18.9말기준 6.8조원으로 개장일('13.7.1일) 대비 14.5배 증가
 - 시장개설 이후 120사가 **총 7,642억원**(282건)의 자금을 조달
 - 개장이후 **42개사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**을 완료(7사 심사 중)
- □ 다만, 최근 이익미실현 요건 확대 등 **코스닥 진입요건이** 크게 완화되어 코넥스시장에 부담으로 작용
 - 코스닥 진입 기대감에 따른 관심 저하로 코넥스 신규상장이 감소^{*}하는 등 코넥스 시장이 위축
 - * '13년(45) → '14년(34) → '15년(49) → '16년(50) → **'17년(29)** → **'18년9월(12)**
- □ 또한, 시장구조적 요인에 따른 거래량 부족으로 가격발견기능이 약화되어 시장이 정체되고 지정자문인(증권사) 부담도 가중
 - 기업들은 주가 저평가로 **자금조달이 곤란**하고, **이전상장 승인율이 낮아*** 비상장기업과 **차별성 부족**하다는 의견
 - * 이전상장 미승인 비율: ('14년)14.3% → ('15년)31.3% → ('16년)41.2% → ('17년)41.6%
 - 벤처투자자들의 경우 **주가 저평가로** 대량주식 매각·M&A 등을 통한 **중간회수·재투자가 어려워**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
 - * 거래회전월월간 추야! ('13년1..2% → ('14년0.4% → ('15년0.9% → ('16년0.8% → ('17년)0.8%
 - 지정자문인도 상대적으로 **낮은 수익성***, 유동성공급자(LP) 참여로 인한 **손실 발생** 등으로 **참여 유인이 낮은 상황**
 - * 코스닥상장時 약 3억 이상 ↔ 코넥스상장時 5천(지정자문업무 포함시 1억 內)

2. 개선방안

- □ 코넥스-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 구축을 위해 **코넥스를 전문 Pre-KOSDAQ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육성**
 - 코넥스시장이 **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** 될 수 있도록 지정자문인과 거래소의 **컨설팅^{*} 기능 강화**
 - * 코스닥 질적심사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에 집중하여 이전상장 활성화
 -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이전상장시 **질적심사**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**질적심사 적용 요건****도 폐지
 - * (현행) 계속성 투명성 안정성 심사 중 계속성 심사만 면제 → (개선) 경영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기업은 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하여 지배구조 투명성을 중심으로 심사
 - **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코넥스 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

- 가격발견기능 저하 문제를 고려하여 코스닥 이전상장 **공모** 발행시 발행가액 산정을 자유화^{*}
 - * (현행) 기준주가(청약일전 3~5 거래일 가중평균산술 주가)에 30%할인 가능 → (개선) 주관사 자율결정

□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시장 참여자 확대 추진

- 소액주주수 50명&지분율 5% 등 **주식분산의무**를 **상장유지 요건**(상장후 1년)으로 도입
- **전문투자자**가 편리하게 대규모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규시장 거래 미형성시에도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등 **대량매매제도*** 개선
 - * 매수·매도중 일방이 5천만원 이상의 수량을 매매신청 (현재 정규시장 거래 미형성시 대량매매 제한 중)
-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**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** 따라 기본예탁금(1억원) 차등화를 추진

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

과제⑩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모든 증권사는 **"인가"를 통해 진입**하고 있으며, **동일한 규제**를 적용받고 있어 종합증권사 모델만을 지향
 - 특화증권사 설립 유인이 적고, 특히 수익성이 높지 않고 건전성 에서도 불리한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이 어려운 측면

- □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**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**하고 **적용 규제도 간소화**
 - ① (업무범위)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
 - 부수업무로 M&A 자문,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소·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허용
 -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**일반투자자 계좌개설 및 관리**, **고객재산 수탁**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
 - ※ 투자자들이 기존 증권회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명칭을 활용하도록 조치
 - ② (진입절차)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
 - ③ (진입요건) 자본금은 5억원*으로 대폭 완화하고, 인적·물적 설비요건은 크라우드펀딩업자 수준**으로 적용
 - *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 자본금은 15억원, 일반투자자를 대상 으로한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
 - ** 일반증권사 최소 6인 / 크라우드펀딩업 최소 2인 등
 - ④ (적용규제)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만큼 NCR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

참고3

미국의 Capital Acquisition Broker 제도

- □ '17.4월 SEC는 Capital Acquisition Broker(이하 'CAB')를 별도 정의하고, CAB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매매·중개업자 (broker-dealer)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법규 개정(안) 시행
 - CAB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비상장증권 중개, M&A자문 등 일부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개업자
 - 업무범위가 제한적임을 감안하여, 준법성 검사·서류제출 의무 경감, BCP(사업연속성계획) 면제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
- □ 기존에도 CAB업무만을 수행하는 회사^{*}들이 있으나, SEC의 前규정체계에 따라 일반 투자매매·중개업자(broker-dealer)로 등록하고, 관련규제를 적용받음
 - * FINRA는 약 16~19% 회원사가 CAB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

------ < CAB 업무범위 및 제한업무 >

□ CAB 업무범위

- 증권발행 등에 대해 발행인에게 자문
- · 영업·자산 양수도 및 분사·합병 등 재무구조조정 자문
- · IB선택 관련 자문, 공모발행 관련서류 준비지원
- ∘ M&A 관련 공정가액 산정 등 가치평가, 협상서비스 등
- ∘ 비상장증권 매매 관련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중개·주선
- 비상장회사 M&A 관련업무

□ CAB 제한업무

- ° 고객계좌개설·관리 업무 금지, 투자자 재산 보관 금지
- 고객의 증권매매 상대방이 되거나 고객 증권 위탁매매 금지
- 투자일임업무 금지, 고유계정 매매거래 또는 시장조성 행위 금지
- 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업무 금지

과제1111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되는 측면
 - ① 엄격한 정보교류차단장치(Chinese Wall)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 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
 - 특히, 차단 대상 정보가 **지나치게 포괄적**이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**불건전영업행위 규제와 중복***
 - * 예) 임직원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,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등(불건전 영업행위 규제)과 부서간 물리적 공간 분리 · 겸직 금지(정보교류차단 장치)는 중복적 성격
 - 정보를 차단해야할 업무·부서를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율 함에 따라 조직구성 및 인사에 자율성*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
 - * 예) 대표이사와 감사 외에는 회사의 모든 정보를 통할할 수 있는 임원을 둘 수 없어 대표이사의 부재·일시적 업무 수행 필요시 적절한 대응이 곤란
 - ② 금투업자의 **업무위탁 허용여부를 법령에서 획일적**으로 규정 하고 있어 Fin-tech 기업에 대한 위탁 등 IT 발전과 경영환경 변화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
 - 업무위탁 **사전보고***도 **사전승인과 유사하게 운영**되고 있어 시장상황에 대응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업무위탁이 곤란
 - *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에 보고(자본시장법 시행령 §46)
 - ③ 금융투자업자가 **겸영·부수업무**를 수행하는 경우 **사전 신고**하도록 되어 있으나, **사실상 사전 심사를 통해 인가제**와 유사하게 운영
 -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도 보고하도록 하여, 행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유발

2. 개선방안

가 정보교류 차단장치

- □ 정보교류차단장치는 법령에서 일반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·운영하도록 하되,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
 - 회사 내·외적으로 유통을 제한해야 할 영업 및 고객 관련 정보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부서 및 외부 정보교류차단장치를 회사 사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계하도록 개선
 - * 준법감시인, 감사 등이 주기적으로 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
 - 인사 및 조직설계, 임직원 파견 등 **회사 내부 운영과 관련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,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**는 지배 구조법상 규제로 **단일화** 하도록 개선
 -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,
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
 - *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

나. 업무위탁규제

- □ **인가를 형해화**하는 수준(업무 과정 전반을 위탁)을 **제외**한 **모든** 위탁을 허용하고, 사전신고를 **사후보고로 전환**
 - 업무위탁으로 인한 **대외적인 책임은 증권회사**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
- □ 위법·부당한 업무위탁은 감독당국에 의한 중지명령·시정 조치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보완

다. 겸영ㆍ부수업무 규제

- □ 겸영·부수업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,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·등록업무는 사후보고도 면제
 - 위법·부당한 겸영·부수업무에 대한 **중지명령·시정조치**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감독

참고4

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방안

- □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 체계는 **투자자 보호에** 일부 **한계 상존**
 - 법령상 위법행위가 열거되어 있고,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 ➡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
 - *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발생하더라 도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 불가
 -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신분적 제재^{*} 중심이고 벌금·과태료 등 금전제재 수준이 낮음 ➡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서 규제의 억제력이 불충분
 - * 주의, 기관주의, 기관경고, 영업정지 등
 - **벌금**(177종) · **과태료**(83종)는 260여종의 위법행위에 부과가 가능하지만 **금액 상한***(2억원, 1억원, 5천만원 등)이 정해져 있어 한계
 - * 단,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의 3~5배까지 부과 가능
 - 과징금의 경우 **공시위반, 신종 시장질서교란행위**, 금융투자업자의 **대주주 신용공여한도** 등 제한적 영역에만 도입
- □ 향후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**영업행위규제**의 경우 세부적·절차적인 규제를 **원칙규제^{*}로 전환**하고, **원칙 위반**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**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**
 - * 예) 선관주의, 충실의무, 이해상충방지,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등
 - 특히,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
 - 위법·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 중지명령, 시정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

과제[12]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

1. 현황 및 문제점

- □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상 금융투자회사가 새로운 상품과 신규 업무를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**매번 변경인가**가 필요
 - 인가에 상당기간이 소요*되어 **신사업 적시 추진에 많은 애로**
 - * 법령상 심사기간 3개월이나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(타 기관으로 부터의 자료 요청. 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) 등 감안시 보다 장기간 소요
 - 이 과정에서 **대주주·본인의 사회적 신용 및 사업계획 요건 미충족**으로 인가를 취득하기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
- □ 이에 반해, 은행·보험의 경우 최초 시장 진입시 받은 인가만으로 과려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신규업무 추진 가능

- □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**업무확장**시에는 **심사를 최소화**하여 탄력적이고 신속한 영업구조 개편을 지원
 -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**금융투자업 업무추가**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로 허용
 - **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*** 및 **사업계획 타당성** 등 재심사 필요성이 낮은 요건은 적용을 면제
 - *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만큼, 업무범위확장에 대한 인가시 대주주 적격성을 다시 심사할 실익이 크지 않음
- □ 세분화된 인가단위*도 일부 통·폐합하여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
 - * 현행 투자매매 중개업 인가단위는 업종 상품 투자자에 따라 총 61개 단위로 구분
- □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**조직변경^{*} 등이 용이**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정비
 - * 예) 외국계 지점 → 현지법인 전환.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변경 등

Ⅳ. 기대 효과

- ①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및 **일자리 창출** 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
 - 사모, 크라우드펀딩, 소액공모 등 **자금공급체계 유연화**로 자본시장을 통한 **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**
 - 혁신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
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연속적 자금공급 체계 조성
- ②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양질의 **일자리** 창출
 - 전문화된 증권회사의 진입규제 등 완화시 **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활성화**로 이어져 금융투자산업 내 일자리 창출 가능
 - * 사모펀드운용업 사례 : 등록제 전환으로 2년('15년~'17년)만에 운용사가 2배 증가하고(93사 → 201사). 일자리가 28% 증가(5,259명→6,733명)
- ③ 금융투자산업 비즈니스모델 확장 및 다변화
 - **전문투자자 문호 개방**을 통해 숙련 투자자군이 형성^{*}되어 다양한 신상품・서비스 개발이 활성화
 - * 금융소득종합과세자 9.4만명, 금융투자산업종사자 4.6만명 등이 전문 투자자로 진입가능
 - 새로운 증권회사(등록진입)와 기존 대형 증권회사와의 전략적 연계서비스, 업무위탁 등이 활성화되어 증권산업의 특화・ 전문화가 보다 가속화되고 증권회사간의 시너지 발생 가능
 - 특히, 인가체계 정비, 업무위탁 활성화에 따라 Fin-tech 기업의 금투업 진출과 금융투자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활성화

Ⅴ. 향후 추진 계획

- □ 중소·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
 -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

* 1차 : 사모펀드 체계개편(9.27일 기 발표)

2차 :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 방안(11월말)

3차 : 자금조달체계 다양화・전문투자자제도 개선・중소기업 전문 증권사

제도 개선(12월)

○ 나머지 7개 과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'19년 1/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

	추진 과제	추진 일정
혁신기업	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	'18.12월 개선방안 발표 '19.1사분기 자본법 국회 제출
자금조달 체계 전면개선	②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	'19.2월 개선방안 발표 '19.上 자산유동화법 국회 제출
	③ BDC제도 도입	'19.1사분기 개선방안 발표
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강화	④ 개인 전문투자자제도 문호 개방	'18.12월 개선방안 발표 '18년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	5 금투업자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활성화	′19.1월 개선방안 발표
	⑥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	'18.9.27일 개선방안 기발표
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	☑ 주관사 자율성・책임성 제고를 통한 IPO혁신	'19.1사분기 개선방안 발표
	8 인수인 자격제한 완화 등 인수제도 선진화	·19.1월 개선방안 발표
	9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	'18.11월 개선방안 발표
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	10 중소기업 전문 증권회사 규제완화	'18.12월 개선방안 발표 '19.1사분기 자본법 국회 제출
	① 증권회사 영업행위 규제 사후규제 전환	<i>'</i> 19.2월 개선방안 발표
	12 증권회사 인가제도 개편	'19년 중 자본법 국회 제출